

## 연구요약

### II. 돌봄의 주류화 관련 기존 문헌 검토

####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체계로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음.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로서 유럽의회에 제출된 'New Start Initiatives'(2018) 및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20 Principles'(2017) 사례, 스웨덴,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 유럽연합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평등과 동등한 대우를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휴가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사회권의 보장 차원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은 노동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근로조건과 분리되어 논의되지 않으며, 하나의 사회권 틀 내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음.
- 북구국가들의 사례들은 돌봄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볼 것인가의 문제, 성평등과 직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의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이와 더불어 돌볼 수 있는 권리, 일하면서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

## 목 차

Ⅱ. 돌봄의 주류화 관련 기존 문헌 검토 .....	8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	30
가. 유럽연합(EU)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 기본 계획 사례 ‘New Start Initiatives’ .....	33
나. 북구국가 등 주요 국가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에 대한 접근 .....	40
다. 한국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향 .....	44

## II

# 돌봄의 주류화 관련 기존 문헌 검토

---

1. 돌봄의 주류화 관련 이론적 논의 9
2. 주요 국가의 시간구조와 한국 비교 15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30

###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돌보는 국가 Caring state’(Leira, 2006; 2002; 1994), ‘돌봄의 정치 Care politics’(Williams, 2010; Michel & Mahon, 2002; Ellingsæter & Leira, 2006; Kamerman & Moss, 2009; Melby, Ravn & Wettberg, 2009), 즉 다시 말해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에 대한 담론은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 안에서 상당히 활발한 논의를 가져 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이 발달된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현금급여를 통한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통한 보편주의 원칙을 통해 돌봄 국가로서의 전형적인 ‘노르딕 복지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어린 부양 자녀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육아휴직제도는 이미 보편적인 사회정책 담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Kaufmann, 2002; Thévenon, 2011; Leira, 1994; Lewis, 2006; Anttone et al, 2012; European Union, 2014; d’Addio and d’Ercole, 2005).

그렇다면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접근은 왜 중요하게 논의 되어야 하는가? 이는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담론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UN)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돌봄 중심의 사회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먼저 노동시장에 대한 남녀의 동일한 기회와 접근성 보장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된다(Thévenon, 2013). Eurostat가 2010년에 발표한 20-64세 연령 인구의 성별에 따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모 역할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분명한 젠더 역할이 나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고용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Eurostat, 2010; European Union, 2014에서 재인용). 한편 유럽 국가 내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11.6% 낮고, 고용 형태를 보면 31.5%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비율이 8.2%에 남짓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전체 남성의 71.2%가 여전히 풀타임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50%에 그치고 있다. 결국 전체 풀타임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에 25.5%의 차이가 나며 여성들의 비경제 활동 요인에는 돌봄에 대한 책임이 주요한 이유로 설명된다(Eurostat, 2010; European Union,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결국 돌봄 부담에 있어서 분명한 남녀간의 젠더차이가 존재하고 이는 남녀 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와 접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불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이러한 젠더화된 노동시장 참여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덴마크의 경우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여성경제활동을 (73%)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근무시간 제와 국가 중심의 아동 보육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앞서 논의한 젠더화된 고용 형태는 이미 유럽 국가들에 연간 3,700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n.d.). 더불어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인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어린 아동을 부양하고 있거나 수발이 필요한 요보호 가족 구성원을 가정 내에서 수발하고 있는 잠재적인 노동인구를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유럽의 대다수 기업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고, 일과 가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 제언이 되고 있

기 때문이다(European Union, 2018a; Eurofound, 2017).

한편 일하는 각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일생활 균형이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사회적 담론이 공유 되고 있다. 일가족 양립의 증진은 단지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을 저해하는 사회적 자원의 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해결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안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기회를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돌봄에 대한 남녀 간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임금 차이, 장기적인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가족 양립의 증진이 왜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논의에 필요한가를 뒷받침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8). 따라서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가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남녀간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들에게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가는 것이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은 물론 안정되고 정서적인 발달과정에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동의를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이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질 좋은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접근 정책의 필요조건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uropean Union, 2018c).

본 절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구축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 기본계획 사례를 소개, 특히 이 부분에서는 현재 유럽 회원 국가들 안에서의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데 있어 국가 간 상이한 차이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 프로포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유럽의 국가들에서 돌봄 중심의 사회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럽 전 국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가 간 정책의 적용 범위에 수준에 있어서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해 두고자 한다. 둘째, 돌봄 중심의 표준 국가 모델이 되고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부 유럽 국가의 돌봄 중심 사회정책 방향과 주요 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장의 마지막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주

는 합의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 가. 유럽연합(EU)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 기본 계획 사례: 'New Start Initiatives'

유럽연합은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침서나 정책프로포절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서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계획들은 '일하는 부모들과 돌봄자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Work 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a; 2017b). 본 절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지침과 발의문 및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European Union, 2018c)에 따르면 상당수의 북유럽 국가들, 가령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 아동의 공보육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당수의 동부유럽국가들의 경우 3세 미만의 아동은 물론 3세 이상 아동들의 공보육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버지들의 육아휴직(paternal leave)에 대한 참여 비율을 보면 휴가 일수와 보상 급여에 있어서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European

Union, 2018b). 전반적으로 17개의 회원 국가들이 자녀의 출산을 기점으로 하는 2주의 아버지 휴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13개 국가만이 '어느 정도 괜찮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성들 대부분 아기가 태어난 이후 바로 하루 이틀 정도의 아버지 휴가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더 연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Belle, 2016). 실제 아버지들의 육아휴직이 아동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 부부간의 육아 분담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실상 90%의 아버지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org, 201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 연방 정부가 조사한 '일가족 양립 조화를 위한 유럽 기업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의 5,000여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 그러한 정책을 제공하는 동기, 혹은 일가족 양립 정책을 저해하는 가장 어려운 방해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눈여겨 볼 부분은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의 기업들은 일가족 양립 정책을 반드시 입안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강제성 정도가 약하고, 일가족 양립을 기업들이 이뤄가는데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0).

이런 점에서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방향은 국가 간 상이한 차이를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가령 2017년 브뤼셀에서 발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회의 '일하는 부모들과 돌봄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발의문(An initiative to support work-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을 보면, 이는 그간 유럽연합이 법적인 지원체계들을 통해 유럽 회원 국가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증진해 왔던 정책 논의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안에서의 관련 법적인 절차들을 좀 더 정교화시킴으로써, 현재의 법적인 장치들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법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목표는 해당 발의문에 잘 드러나는데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의 모든 개인과 가족들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것과 모성휴가 지침에 대한 각 국가 간 적용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 내 제 2부양자가 일을 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충분하고 적절한 사

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외 장치들을 통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유럽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가족 양립을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틀이다(European Commission, 2017a).

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 젠더에 따른 임금 격차와 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일 것.

② 현재 법률상에서 그리고 정책들 안에서 남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참여를 늘릴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과 가족을 양립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선택을 제공 할 것.

③ 최근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 할 것.

④ 케어 서비스 시설에서의 노동력 부족 부분을 강조하고 가족 내 돌봄과 부양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제 2부양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 줄 것.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틀은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가려져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 기본계획들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015년에 제시된 'New Start Initiatives'에 그 기본 원칙과 정책적 목표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기본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하는 부모들과 돌보는 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고 직업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더불어 이는 장기적으로 임금과 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또한 여성의 빈곤화를 줄이는데 그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들의 돌봄노동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일가족 양립도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European Commission, 2017b).

더불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단지 일하고 돌보는 부모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당 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앞서 짧게 언급한 대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임으로 인해 해소되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양질의 노동인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내 용
유럽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하는 부모들과 돌봄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조건과 특히 여성들의 고용률과 소득 그리고 더 나은 직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li> <li>- 임금과 연금수급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빈곤문제를 줄이고자 함</li> <li>- 아버지들의 경우 가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li> <li>- 돌봄노동자들의 경우(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그들의 일로부터 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함</li> </ul>
비즈니스 섹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인력풀 확보</li> <li>- 기술 부족의 문제 해결</li> <li>- 고용주들은 기존의 노동자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매력적인' 사업체로서의 인식)</li> <li>- 노동자들의 결근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li> </ul>
회원 국가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재원의 실업을 줄이고 세제를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공공재원 향상</li> </ul>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공급을 늘림으로써 경쟁력 향상</li> <li>- 인구학적 변화는 전체 노동시장 인구를 늘림으로써 문제 해결</li> </ul>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a).

한편 이러한 유럽연합 조약은 해당 사회정책 내에서 보조법(secondary legislation)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대우, 둘째,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대우(동일 임금,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 고용과 직업 훈련, 승진, 근로 조건 등에 대한 동일한 처우),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

공(특히 최근 출산을 한 여성이나 수유 중인 여성들에 대해), 넷째,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파트타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 다섯째, 부부간 양도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닌 개인 단위 수준에서 부모 휴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째, 출산을 기점으로 적어도 4개월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한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래 표는 New Start Initiatives를 통해 현재 유럽연합법과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이 가져 올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구 분	현재 유럽연합 법	정책 프로포절의 영향
배우자 출산 휴가 (Paternity leave)	· 남성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없음	모든 일하는 아빠들은 적어도 파트너의 출산일을 기점으로 10일의 고용 일수를 출산휴가로 신청할 수 있음
부모 휴가 (Parental leave)	· 모와 부 중 적어도 한 명은 4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1개월은 부부간에 양도할 수 없음	적어도 4개월은 부부간에 양도할 수 없음
	·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휴가를 가질 수 있음	부모는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 휴가 신청 할 수 있음
돌봄 휴가 (Carers' Leave)	· 수당과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 없음	부모 휴가를 하는 경우, 적어도 병가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돌봄자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법령 기준은 없음	모든 노동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부양 친척이 있는 경우 1년

유연근무제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가족 구성원간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	에 5일의 돌봄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휴가 기간이나 보상에 대한 기준 없음	돌봄 휴가를 갖는 경우 병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 부모 휴가에서 돌아온 후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 유연을 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근로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 있음	12세 아동이 있는 일하는 부모와 수 발해야 할 가족구성원이 있는 돌봄자들은 다음의 근무 유연제를 신청 할 수 있음 - 근무시간 단축 - 근무시간 유연제 - 근무공간의 유연성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b)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이 제출되기까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미 2008년도에 '모성휴가(Maternity Leave Directive)'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여성들, 특히 임신 중이거나 부양 아동이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가려져 있는 현황 등에 집중하여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수유 등 안전한 일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법안 진행이 무산되자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일가족 양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들을 내세웠다. 2015년 5월 20일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그 새로운 법안을 철회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회원 국가들의 해당 정부 관료들에게 동의할 것을 요

구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18).

이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과정의 컨설팅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책영향 평가들 역시 상당히 이루어진 바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해당 관련 기구들(European social partners)과 두 단계에 걸친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여론들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유럽 의회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토론을 열었고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16년 '일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만들어 가기 Creating Labour Market Conditions Favourable to Work-Life Balance'(European Parliament, 2016)라는 보고서로 출간한 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a; European Parliament, 2016).

한편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동으로 선언한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up>1)</sup> 결의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 원칙들과도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8). 본 결의안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시민들을 위한 새롭고 더 효과적인 권리 전달

(delivering new and more effective rights for citizens)'을 목표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세 가지 원칙('노동시장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접근', '공평한 근로 조건',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20개의 세부 원칙들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돌봄 중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Pillar 2, 3, 4, 5, 9, 11), 특히 Pillar 9와 11은 직접적으로 일가족 양립과 아동보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New Start Initiatives'는 '성평등', '동등한 기회', '고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안전하고 적응 가능한 고용 관계', '일가족 양립', '공보육과 아동지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 입안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개인 단위에서의 돌봄에 대한 선택과 권리와 함께, 유급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력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돌봄노동과 유급노동의 양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류	세부내용
노동시장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1. 생애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Education,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2. 성평등(Gender equality)
	3. 동일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접근	4. 고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Active support to employment)
공정한 근로 조건	5. 안전하고 적응 가능한 고용 관계(Secure and adaptable employment)
	6. 임금(Wages)
	7. 해고에 대한 고용 조건과 보호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employment conditions and protection in case of dismissals)
	8. 사회적 담론과 근로자들의 참여(Social dialogue and involvement of workers)
	9. 일가족 양립(Work-life balance)
	10.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데이터 보호(Healthy, safe and well-adapted work environment and data protection)
사회적 보호와 포용	11. 아동 보육과 아동에 대한 지원(Childcare and support to children)
	12.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13.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s)
	14. 최저 소득(Minimum income)
	15. 노령 소득과 연금(Old age income and pensions)
	16. 의료 보호(Health care)
	17.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18. 장기 보호(Long-term care)
	19. 노숙자들에 대한 주거와 지원(Housing and assistance for the homeless)
	20.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services)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한편 추측하건대, 오늘날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이 제안되기까지 회원 국가들 간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끊임없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관련 비즈니스 영역의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정책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논의 과정 또한 간과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단지 성평등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왜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필요한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포괄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개혁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돌봄 중심의 정책들을 소개는 하였지만, 이것들을 해당 회원 국가들 안에서 동일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데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적인 지침들이 해당 회원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전제는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 나. 북구 국가 등 주요 국가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에 대한 접근

### 1) 스웨덴: 성평등 구현을 위한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접근

스웨덴의 돌봄 중심 사회정책 접근은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Carlson, 2013). 페미니스트 정부라 자칭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는 성평등 관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의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놓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성주류화 관점이 예산 집행을 포함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그들 각각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국가 정책 기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평등에 대한 구현은 오늘날 '더 나은 복지국가'로의 가장 큰 정책적 접근이자 해결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평등에 대한 구현은 '돌봄 국가'로서의 국가 정책 과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스웨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sup>11)</sup>에 따르면 성평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목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힘을 균형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부(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는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성평등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권력과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활

동적인 시민으로 의사 결정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성평등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그들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주는 유급 노동 참여에 대한 기회와 조건에 있어서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어린 아동들을 포함해, 그들의 교육 선택과 개인 발달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조건들을 가져야 한다. 넷째, 무급 노동과 아동 케어에 대한 성평등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 노동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케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여성과 남성 모두 어린 아동들을 포함해, 그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건강에 대한 성평등). 여섯째, 여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성적 위협과 폭력이 근절 되어야 한다.

스웨덴 성평등부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 목표
① 정치적 성평등
② 경제적 성평등
③ 교육의 성평등
④ 무급 노동에 대한 동등한 분배
⑤ 건강에 대한 성평등
⑥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자료: 스웨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

visions/(검색일: 2018.12.05.)

특히, 스웨덴 성평등부가 제시하고 있는 하위 정책 목표 네 번째를 들여다보면 여성과 남성은 가사 노동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케어를 받고 제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지 남성과 여성간의 무급 노동에 대한 분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에 대한 분배를 의미한다. 이는 또한 가사 노동, 자녀에 대한 케어, 노부모에 대한 돌봄 혹은 부양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돌봄노동 등 모두를 포함한 의미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 목표는 아동과 노인을 포함해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정책 목표와도 연결된다.

여기에서 잠시 스웨덴 성평등부 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2018년 1월에 설립된 기구로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정책 전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성평등 요인이 약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성평등부를 설립하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기구는 정부 기관, 지자체, 지역 의회, 시민 사회 단체, 기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동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는

성평등과 관련된 위에 제시된 6개 영역에 대한 정책 평가와 각 관련 기구와 정책들을 지원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정책 접근은 돌봄노동이 개별적인 정책으로 접근하기보다 성평등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성평등 중심의 정책 접근은 돌봄노동이 왜 남녀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가 성평등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덴마크: 사회 전체가 돌보는 사회

최근 OECD가 발간한 'Better Life Report'에 따르면 덴마크는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사회 전체가 돌보는 사회로 일가족 양립을 이루는 최고의 국가로 손꼽힌 바 있다(OECD, 2017a). OECD 전체 고용자의 13%가 장기간의 근로를 하는 반면 덴마크의 경우 단지 2%의 고용자만이 장기간의 근로를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하루 중 2/3의 시간(대략 16시간)은 먹고, 잠자는데, 그리고 레저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반면, 일을 할 때에는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최대한 즐기고, 근로자들 스스로 언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점심 시간에는 모든 동료들이 다 함께 점심을 즐기고 교체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정해져 있다. 더불어 모든 근로자들은 최소한 5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덴마크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2.4 시간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36.6시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 2017b). 근로시간 대비 1인당 GDP를 통해 장기간의 근로시간이 생산성 향상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의 최근 OECD 연구결과를 보면 장기간의 근로는 오히려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실제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8). 이러한 덴마크의 단기간의 근로시간은 삶의 행복도와도 연결되는데 덴마크는 2013년 '행복한 나라(World Happiness Report)'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2015년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72%의 덴마크 여성들이 유급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 유급노동시장 참여율이 59%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OECD

평균 59%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것이 가능 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근로 시간과 근무 유연, 국가 중심의 아동보육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기회가 많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에서 부모 휴가는 법적으로 52주의 유급 모/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출산 4주 그리고 출산 후 14주가 모에게 배당되고, 2주는 출산 이후의 첫 14주 이내에 아버지에게 그 휴가가 배당되며 32주의 유급 휴가를 부모 간에 자유롭게 분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무급 32주의 부모 휴가를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덴마크 정부는 'The Perspective and Action Plan'을 통해 아버지들의 부모 휴가 참여를 높이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Ministry for Gender Equality, 2014; European Parliament, 2015 재인용). 1997년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 정부는 부에게 배당되는 2주의 부모 휴가를 부가적으로 도입하였지만, 그 당시 자유 보수당(Liberal-Conservative)에 의해 무산되었다. 2011년 정부는 정부 시책(Government Platform)을 통해 아버지들에게 3개월간의 부모휴가를 배당 할 것을 권장하고, 2012년 해당 위원회(The Leave Commission) 발족을 통해 정책 실현성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부모 휴가 기간을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배당하는 것

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과제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노조 대표, 고용자 대표, 관련 정부 관계자들, 비정부 관련 기구 대표들을 불러 효과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2013년 부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련 규율, 규제 등을 보고한 바 있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위원회는 해당 국가 연구 기관(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에게 '아버지 휴가(Earmarked leave for fathers)'와 관련하여 노르딕 국가들에 관한 제도 시책의 현황과 주요 과제들을 연구하게 한 바 있다. 연구결과, 아버지들의 부모 휴가율이 증가한 반면, 어머니들의 경우 유연한 부분의 휴가를 이용하였고 선택에 따라 그들의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휴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연성과 경제적 보상은 그 휴가 기간의 공평한 분배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남성들의 2/3이 가능하다면 12주의 휴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가 기간 동안의 전체 임금을 받는 것과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Government Platform은 자영업자들에 대

한 모성의 동등화(Maternity equalization)를 제시하고 2013년에 이를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영업 민간 영역의 근로자들이 모성 휴가를 갖는 동안 그들의 소득을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보육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첫째, 정부는 부모들의 아동보육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일가족 양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틀을 향상 시킬 것, 둘째, 정부는 어린 아동들의 학습, 발달, 그리고 그들의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 셋째, 전문성과 리더십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것 등이다.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돌봄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 와 있고, 이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 재분배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오랫동안 사회에 길들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노동이 맡겨지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그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돕고 이를 통해 돌봄이 노동시장으로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행복에 중요한 가치 수단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정책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Rostgaard, 2014).

## 다. 한국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향

서구 유럽 사회와 다르지 않게 한국 사회정책 발달 논의에서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가기 위한 정책적 담론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일가족 양립 등 각 개별 정책 단위에서의 돌봄노동의 사회화 논의와 더불어, 오늘날 돌봄 중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한국 사회정책 논의의 상당한 발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사회적 욕구는 돌봄이 더 이상 사적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국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논의의 함의는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과 다르지 않게 한국 역시 ‘돌봄 노동의 사회화’, ‘돌보는 국가’, ‘돌봄의 정치’ 등 국가의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적 수사들과 함께 이미 2000년대를 전후로 힘차게 논의 발전되어 왔다 (백선희 2009, 2011; 변화순 2000; 김종해 2003, 2004, 2006, 2008; 마경희 2005; Peng 2009).

그럼에도 한국 사회정책 논의에서 이러한 국가 영역의 책임, 즉 사회화된 돌봄의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는 동안, 정작 개인 혹은 개별 가족이 돌봄 역할과 유급노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제반의 충분조건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물론, 돌봄의 사회화와 국가책임의 강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의 요소로서, 향후에도 사회화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경주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문제, 더 나아가 성별에 근거하여 종일 일하거나 독박돌봄을 수행하거나를 선택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즉 사회적 역할배분의 젠더 관계 문제는 정책담론에서 아직까지 걸돌고 있다. 가령 국가 단위에서의 돌봄 책임이 확대되어 사회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확대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개별 정책 단위에서의 정책 담론 진전은 있었을 수 있으나, 젠더 관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질 경우 이는 다시 저임금의 주변부 노동으로 돌봄이 '떠맡겨 지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서비스 질 향상 논의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구조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한국적 돌봄정책의 맥락적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기본계획과 북구 유럽의 스웨덴

과 덴마크의 돌봄 중심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에 대한 권리적 접근이다. 즉 돌볼 수 있는 권리이다. 지금껏 돌봄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로 접근되어 왔다. 가령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혹은 가족 내 누군가에게 돌봄을 의지해야 하는 구조로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작 '돌봄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일까?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는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장시간 근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급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시간이 길다보니 가족 안에서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는 최근 가까스로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이뤄냈다. 놀라운 정책적 성과임에도 여전히 OECD 등 서구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최소 400시간 이상의 더 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OECD 2017b).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시간의 근로는 오히려 생산적인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만족을 가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개별 정책 단위, 가령 보육정책, 일가족 양립정책 등 서로 다른 정부 부처 단위에서

그 논의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다 보니 정작 개선되어야 할 노동시간에 대한 개선 문제는 돌봄노동의 사회화 논의에 벗어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시간 단축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 단위에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돌봄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서의 접근이다. 즉 돌봄노동에 대한 유급 노동으로서의 동일한 가치 인정과 동일한 성별 분업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은 이미 여성학계 논의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노동이 유급 노동으로서의 가치와 동등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돌봄노동에 대한 유급 노동으로서의 동일한 가치 인정 없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급 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은 단지 현금 급여로 돌봄노동을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와 별개 문제이다. 문제는 유급 노동 시장의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부모 휴가를 얻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느냐와 직결된다. 정책 설계에 있어서 남녀 모든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

로 인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남녀에게 동일한 성별 분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이 아닌 의무로' 부모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결국 가사 노동에 대한 성별 분업 또한 자연스럽게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적 효과 역시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이중 부양자-이중 돌봄자(dual earner-dual care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무급 노동에 대한 가치가 유급노동 선상에서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누군가는 유급 노동을 포기하고 무급 노동을 해야만 하며 이는 결국 다시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 관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셋째,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젠더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다. 기존의 일가족 양립 정책이 같은 여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더 나은 소득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Mills & Präg, 2014; Bergman & Gardiner, 2007), 이제는 돌봄과 가족의 양립 책임에 있어서 고용관계와 소득 수준을 넘어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젠더 중립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논의는 사회 전체를 통해 돌

봄이 재분배되는 것은 물론 돌봄과 일(유급노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선 시되거나 양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돌봄을 하나의 주변부 노동으로 가져가는 것 혹은 돌봄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와도 별개이다.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적 제언, 돌봄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가치가 유급노동과의 동일한 선상에서 가치 인정이 이뤄져야 할 것 등을 충분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그 정책 효과와 젠더 관계를 넘어 개인의 주관적 경험 단위에서의 돌봄과 일이 조화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1. 연구요약	111
2. 돌봄자를 전제한 노동시장정책 개선방향	115
3. 돌봄중심의 교육환경 개선방향	124
4. 돌봄중심의 저출산 대응정책 프레임 및 과제 제안	129

## 1. 연구요약

셋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체계로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로서 유럽의회에 제출된 'New Start Initiatives'(2018) 및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20 principles'(2017) 사례, 스웨덴,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평등과 동등한 대우를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휴가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권의 보장 차원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은 노동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근로조건과 분리되어 논의되지 않으며, 하나의 사회권 틀 내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북구 국가들의 사례들은 돌봄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볼 것인가의 문제, 성평등과 직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이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의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이와 더불어 돌볼 수 있는 권리, 일하면서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맞벌이 유

자녀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의 가장 큰 변화는 2003년 주5일제 시행으로,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한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법제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유연근무제와도 연결되는데, 유연근무제는 시간의 유연화(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및 공간의 유연화(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는 주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사업주에게는 유연근로제 도입 시 금액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기존 방식에 대한 혁신과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삭감과 인사관리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가 양쪽에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성은 높이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 없고 업무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을(또는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데, 이 조건들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줄어든 노동시간이 돌봄시간으로 이전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시간 재배치와 관련하여 노동시간의 단축이 돌봄시간의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전통적 성역할 규범으로 인한 노동/돌봄시간

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젠더차원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이다.

## 참고문헌

- 강민정·김은지·권소영·서형도·우창수. (20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확산 방안 및 모델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고용노동부. (2018).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 김경수·허가영·김윤수·김상미. (2018).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 김근주. (2018.11.19.).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본원 전문가라운드테이블 발표자료(비공개자료).
- 김영란. (2018).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수요 추정과 공급 중심의 방과후 돌봄 재검토.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놀이를 더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자료집(2018.8.28.).
- 김영미·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국여성학. 31(3). 1-30.
- 김영옥·김종숙·이선행. (2017).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 김은지. (2008). "남녀의 시간사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영유아가족 지원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지·김소영·선보영·성경·양난주·김수정·김혜영. (2017).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은지·최진희(2017).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유자녀가족 지원정책 정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인경. (2017).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김종필. (2018). 영유아의 권익 및 보육교직원 근무여건 개선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합리적인 기준. 국회 정책토론 "영유아 권익 관점에서 본 어린이집 보육시간! 이대로 괜찮은가? : 8시간보육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료집(2018. 9. 20.).
- 김종해. (2003).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위해, 참여연대 "보육발전을 위한 합리적 선택은 무엇인가" 토론회 자료 (2003. 4.23.).
- 김종해. (2004).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대 방안, 복지동향, 33-44.

- 김중해. (2006). 중장기 보육계획(안)에 대해, 복지동향, 3. 29-33.
- 김중해. (2008).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발표 자료집 (2008. 4. 25-26)
- 김주아. (2018.11.20.). 초등 돌봄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시수 분석. 본원 전문가라운드 테이블 세미나 자료(비공개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6).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실태조사」.
- 마경희. (2005). 사회권으로서의 돌봄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여성과 사회, 5(16), 35-66.
- 박일수. (2014). 초등학교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국제 비교: “2014 교육체제” 상위 10개 국가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7(3). 75-95.
- 백선희. (2009).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의 보육정책 평가, 상황과복지, 28, 95-141.
- 변화순. (2000). 한국 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원경. (2016). “남성의 노동시간이 둘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숙·강성례·김혜옥. (2007).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 경험: 초점집단 연구방법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37(1). 114-124.
- 이삼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김동식·서문희·윤지영·이상협·이윤석·천현숙.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창준. (2018). 놀이 더하기로 행복을 키우는 초등교육 정책 제안.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놀이를 더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자료집(2018.8.28.).
- 정재훈. (2018).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성평등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보건복지포럼. 261. 22-34.
- 최유진·이택면·황정임·마경희·주재선·김은지·이현재·문희영. (2016). 「2016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통계청. (1999). 1999년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 통계청. (2004). 2004년 생활시간조사 종합분석사업보고서.

통계청. (2009). 2009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14). 2014년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2016). 2016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3호 출생통계.

통계청. (2017). 2017년 일·가정 양립 지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2018년 제2차 성평등 현안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해외문헌]

Anttonen, A., Rianne, M and Bergqvist, C. (2012). Convergent care regimes? Childcare arrangement in Australia, Canada, Finland and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2(4), pp. 419-431.

Bergman, A., and Gardiner, J. (2007). Employee Availability for Work and Family: Three Swedish Case Studies. *Employee relations*, 29(4): 400-414.

Borg, A., (2018) Work-life Balance: Public hearing: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presentation at the European Parliament, Brussels, 21 February 2018.

Carlson, J., (2013). Sweden's Parental Leave Insurance: A policy analysis of Strategies to increase gender equality. *The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40(2), pp.63-76.

Cooke, Lynn Prince, (2009).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 Italy and Spai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 38, No. 1, 2009, pp.123~140.

Crompton, R. (ed) (1999).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the decline of the male breadwinn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D'Addio, A. C., & d'Ercole, M.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Paris: OECD.

Ellingsæter, A. L., & Leira, A. (2006).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gender relations in welfare states*. Bristol: The Policy Press.

Esping-Andersen, G. (2016). Families in the 21st Century, <https://www.sns.se/wp-content/uploads/2016/10/families-in-the-21st-century-webb.pdf>.

Esping-Andersen, G.(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Esping-Andersen, G., &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Eurofound. (2017). Work-Life balance and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in the European Union, Eurofound, Dublin.

European Commission. (2017a).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n initiative to support work-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OM%3A2017%3A252%3AFIN>) (검색일: 2018.12.08.)

European Commission. (2017b).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2010/18/EU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com-2017-253\\_en](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initiatives/com-2017-253_en)) (검색일: 2018.12.08.)

European Commission. (2018) 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20 principl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deeper-and-fairer-economic-and-monetary-union/european-pillar-social-rights/european-pillar-social-rights-20-principles\\_en](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deeper-and-fairer-economic-and-monetary-union/european-pillar-social-rights/european-pillar-social-rights-20-principles_en)) (검색일: 2018.12.08.)

European Commission. (n.d.) A new start support work-life balance for parents and carers.

European Parliament. (2015). The Policy on Gender Equality in Denmark. Brussels: European Union.

European Parliament. (2016). Report on creating labour market conditions favourable for work-life balance (2016/2017(INI))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pubRef=-//EP//NONSGML+REPORT+A8-2016-0253+0+DOC+PDF+V0//EN>) (검색일: 2018.12.08.)

European Parliament. (2018). Briefing EU Legislation in Progress- A new directive on work-life balance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14708/EPRS\\_BRI\(2018\)61470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14708/EPRS_BRI(2018)614708_EN.pdf)) (검색일: 2018.12.08.)

European Union. (2014). Parents at work: Men and women participating in the labour force, Short statistical report No 2. Contract ref. no. JUST/2011/GEND/PR/1081/A4 April 2014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RR348/RAND\\_RR348.pdf](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research_reports/RR300/RR348/RAND_RR348.pdf)) (검색일: 2018.12.08.)

European Union. (2018a). Family-friendly workplaces: overview of policies and initiatives in Europe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738&langId=en&pubId=8137&furtherPubs=yes>) (검색일: 2018.12.08.)

European Union. (2018b).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policies across the European Union:

- Assessment of current provis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2018c). Changes in child and family policies in the EU28 in 2017: European Platform for Investing in Children: Annual thematic report (doi:10.2767/14467)
-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0). European Company Survey on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Berlin: Germany (<https://www.bmfsfj.de/blob/93702/071fa9d81736a3dbced5af894800cf90/europaeischer-unternehmensmonitor-familienfreundlichkeit-englisch-data.pdf>) (검색일: 2018.12.08.)
- Feyrer, James, Bruce Sacerdote, & Ariel Dora Stern, (2008). "Will the Stork Return to Europe and Japan? Understanding Fertility within Developed Nat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2, No. 3, 2008, pp.3~22.
- Fraser, N. (1997). "After the Family Wage: A Post Industrial Thought Experiment", in *Justice Interruptu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Postsocialist' Conditions*. London: Routledge.
- Hogarth, T., Hasluck, C., and Pierre, G. (2000). Work-Life Balance 2000: Baseline Study of Work-Life Practices in Great Britain, DTI, London.
- Kammerman, S. B., & Moss, P. (2009). *The politics of parental leave policies: children, parenting, gender and the labour market*. Bristol: Policy Press.
- Kaufmann, F. X. (2002).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 2: Problems and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inoshita, Y., & Guo, F. (2015). What can boos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Asia? (No. 15-5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Leira, A. (1994). Concepts of Caring: Loving, Thinking, and Doing. *Social Service Review*, 68(2), pp. 185-201.
- Leira, A. (2002). *Working parents and the welfare state: family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ira, A. (2006). Parenthood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1970s-2000s. In A. L. Ellingsæter & A. Leira (Eds.),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Gender relations in welfare states* (pp. 27-51). UK: The Policy Press.
- Lewis, J. E.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 Lewis, J. E. (2006). *Children, changing families and welfare states*. Cheltenham: Edward Elgar.
- MacKinnon, C. (1987).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Melby, K., Ravn, A., & Wetterberg, C. C. (2009). *Gender equality and welfare politics in Scandinavia: the limits of political ambition?* UK: The Policy Press.
- Michel, S., & Mahon, R. (2002).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gender and welfare state restructuring*. New York: Routledge.
- Mills, M., P. Präg. (2013). "Family-related working schedule flexibility across Europe." Short Statistical Report No.6. RAND Europe/University of Groningen.
- Milotay, Nora. (2018). The 'EU Legislation in Progress'– A new directive on work-life balance ([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14708/EPRS\\_BRI\(2018\)614708\\_EN.pdf](http://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8/614708/EPRS_BRI(2018)614708_EN.pdf))
- Moss, P. (2015). 11th International Review of Leave Policies and Related Research 2015. London: International Network on Leave Policies and Research. Available at: [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http://www.leavenetwork.org/lp_and_r_reports/) (검색일: 2018.12.11.)
- O'Connor, J. (1996). "From women in the welfare state to gendering welfare state regimes", *Current Sociology*, 44(2), 1-124.
- OECD. (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OECD Publishing.
- OECD. (2018a). *Education at a Glance*. OECD Publish.
- OECD. (2018b).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oecl\\_lfs-2018-en](https://doi.org/10.1787/oecl_lfs-2018-en).
- OECD. (2018c). International productivity gaps: Are labour input measures comparable?, SDD Working Paper No. 99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SDD/DOC\(2018\)12&docLanguage=En](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SDD/DOC(2018)12&docLanguage=En) (검색일 2019. 03.15)
- 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3-328.
- Pateman, Carole. (1988).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eng, Ito. (2009)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s*. 6.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Rostgaard, T. (2014). Family Policies in Scandinavia. ([http://vbn.aau.dk/files/216735568/Rostgaard\\_Family\\_policies\\_in\\_Scandinavia.pdf](http://vbn.aau.dk/files/216735568/Rostgaard_Family_policies_in_Scandinavia.pdf)) (검색일: 2018.12.08.)
- Sainsbury, D. (1994). Gendering welfare states, London: Sage Publications.
- Sainsbury, D.(Eds.).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s Reg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ssoon, A. S. (Ed.). (1987).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Routledge.
- Smithson, J. and Stokoe, H. (2005). 'Discourses of Work-Life Balance: Negotiating Gender Blind Terms in Organizations', Gender, Work and Organisation, Vol. 12(2). Pp. 147-68
- Thévenon, O. (2011).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57-87.
- Thévenon, O. (2013). Drivers of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the OECD. Paris: OECD Publishing.
- Van Belle, J. (2016).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Policies across the European Union, RAND Corporation, Santa Monica and Cambridge.
- Williams, F. (2010). Claiming and framing in the making of care policies: th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of care. *Vol. 13. 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 Geneva: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 [URL 및 신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http://www.law.go.kr) (검색일: 2018.11.10.)
- 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18.11.10.)
- 동아일보. (2017.01.25.). '워킹맘 과로사, 계속 내버려둘 건가요'. ([http://news.donga.com/List/Series\\_890101/3/890101/20170125/82590628/1](http://news.donga.com/List/Series_890101/3/890101/20170125/82590628/1)) (검색일: 2018.12.11.)
- 스웨덴 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visions/> (검색일: 2018.12.05.)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http://www.worklife.kr) (검색일: 2018.11.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검색일: 2018. 12. 11.)

통계청 e-나라지표, 출산 및 사망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검색일: 2018.09.05.)

통계청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04&board\\_cd=INDX\\_001](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504&board_cd=INDX_001)(검색일: 2018.09.05.)

한국일보. (2016.10.11.). '국가의 자궁인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610110437192656> (검색일: 2018.10.23.)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 - booklet, [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european-pillar-social-rights-booklet\\_en](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european-pillar-social-rights-booklet_en) (검색일: 2018.12.05.)

OECD Data. <https://data.oecd.org/eduresource/teaching-hours.htm> (검색일 2018.11.23.)

OECD. (2017a)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검색일: 2018.12.08.)

OECD. (2017b).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https://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 (검색일: 2018.11.20.)

OECD Family Database. (2016).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검색일: 2018.08.21.)

## [보도자료]

통계청. (2018).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8.3.15.).

행정안전부. (2018).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하교시간(14~18시)에 집중.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8.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아동, 2040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핵심과제 위주로 선택과 집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12.6.)

---

i 본 결의문의 전문은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european-pillar-social-rights-booklet\\_en](https://ec.europa.eu/commission/publications/european-pillar-social-rights-booklet_en)(검색일:  
2018.12.05.)

ii 스웨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는 다음 링크를 참조 바람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visions/> 검색  
일: 2018.12.05.)